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 피의자 · 소년범을 중심으로 -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 피의자 · 소년범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 손 찬 호**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제2장 지역경찰과 인권의 이론적 검토 .....	5
제1절 지역경찰의 개념과 임무 .....	5
1. 지역경찰의 개념 .....	5
2. 지역경찰의 임무 .....	6
제2절 지역경찰관의 근무 .....	7
1. 순찰 및 거점근무 .....	7
2. 현장출동 초동조치 및 불심검문 .....	8
3. 방법진단 및 경찰방문 .....	9
4. 협력방법활동 및 방법홍보활동 .....	10
5. 수사·교통·경비업무 등 .....	11
제3절 인권과 지역경찰관의 직무집행 .....	12
1. 인권의 개념과 인권법 .....	12
2. 기본권제한과 지역경찰관의 직무집행 .....	14
3. 경찰관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현황 및 주요사례 .....	16
가.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및 처리현황 .....	16
나. 경찰관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주요사례 .....	18

4. 지역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와 관계인 인권보호 .....	20
제3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	23
제1절 문제의 제기 .....	23
제2절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권리 .....	24
1. 범죄피해자의 개념 .....	25
2. 범죄피해자의 권리 .....	26
제3절 범죄피해자 관련 법령과 보호제도 .....	27
1. 범죄피해자 관련 법령 .....	27
2. 범죄피해자 관련 보호제도 .....	30
3. 경찰의 피해자 보호 .....	32
가. 외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 .....	32
나. 우리나라 경찰의 피해자 보호 .....	34
제4절 지역경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	35
1. 신고접수와 피해자 보호 .....	35
2. 현장출동 초동조치와 피해자 보호 .....	36
3. 피해조사와 피해자 보호 .....	38
제4장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	39
제1절 문제의 제기 .....	39
제2절 피의자 개념과 지위 .....	40
1. 피의자 개념 .....	40
2. 피의자의 지위 .....	41
제3절 범죄피의자 권리와 보호제도 .....	43
1. 피의자 권리 .....	43
2. 미란다원칙 고지와 피의자 방어권 고지 .....	45

가. 미국의 미란다원칙 고지 .....	45
나. 우리나라의 피의자 방어권 고지(피의자 권리 고지) .....	47
3. 현행 체포관련 관례 및 보호제도 .....	49
제4절 지역경찰관의 범죄피의자 보호 방안 .....	53
제5장 소년범에 대한 인권보호 .....	55
제1절 문제의 제기 .....	55
제2절 소년의 개념과 소년범죄의 현황 .....	57
1. 소년의 개념 .....	57
2. 소년범죄의 현황 .....	61
제3절 청소년 관련 법령 및 보호제도 .....	63
1.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	63
2. 청소년보호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	63
3. 소년업무 처리규칙 및 보호제도 .....	65
제4절 지역경찰관의 소년범 보호 방안 .....	68
1. 신고접수와 소년범 보호 .....	68
2. 현장출동 면접과 소년범 보호 .....	69
3. 비행조사와 소년범 보호 .....	69
제6장 결론 .....	70
참 고 문 헌 .....	77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0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경찰은 인권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을 보호하는 인권경찰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우리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sup>1)</sup>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항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충돌이 불가피한 위험에 놓여 있다. 더욱이 일정한 담당구역을 가지는 지구대(파출소)를 활동거점으로 하여 범죄 및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순찰을 실시함과 아울러 발생하는 각종 경찰사건·사고에 즉응하는 활동과 경찰민원을 처리하고 범죄정보 및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수집 해결하도록 하는 전

---

1)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제시하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경우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의한 제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도 기본권 제한에 관한 입법권의 한계로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원칙, 필요성의원칙, 본질적내용의 침해금지 원칙 등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문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포함하는 일반적이고 초기적인 경찰업무를 최 일선에서 수행하는 지역경찰관은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경찰작용의 성격상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충돌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지역경찰관의 직무집행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찰이 되어야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에서 인권과 관련된 국민과의 최초 대면은 범죄 신고사건을 접수하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는 지역경찰관에 의하여 대부분 이루어진다. 각종 범죄 신고사건이 관할 지구대(파출소) 112순찰차 근무 지역경찰관에게 하달되면 지역경찰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 범인 검거 등 초동조치를 하게 된다. 대도시 지역경찰관은 이러한 신고사건 초동조치 등의 근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지역경찰관의 직권이 발동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피해를 받은 범죄피해자들은 그들이 겪으면서 피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범죄 피해자는 피신고인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없어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신고를 하지 않고도 피신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보복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지역경찰관이 신고사건을 초동조치 함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부주의, 편견, 거친 언행 등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상처, 고통을 주는 사례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경찰관이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긴급을 요하여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단기간의 신체구속(체포)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본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

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모호하여,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경찰권발동의 한계로서의 의미가 있는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경찰권 발동이 자칫 불법체포가 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한편 청소년은 신체발달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호기심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으로 범죄행위를 하여 처벌받음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내일의 주인공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될 수 있다. 따라서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처벌보다는 건전한 지도육성과 보호가 우선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처리하여야 하여야 하나, 사회적 약자인 소년범 처리에 있어서 소년의 심리·생리·성행·환경·기타 비행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와 변호인·보호자의 입회 및 심리사 등 전문가의 참가 등이 확보되지 못하여 조사후의 공정성과 투명성,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과의 최일선 접점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찰관이 인권과 관련 국민과의 대면접촉이 최초 이루어지는 범죄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범죄피해자·피의자·소년범에 대한 사건처리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인권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인권 지역경찰관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지역경찰관이 근무 중 국민과의 대면접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 신고사건을 접수 초동조치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피의자·소년범 등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에 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지역경찰과 인권의 이론적 검토에서 우리나라 지역경찰의 개념과 임무, 근무를 살펴보고, 인권과 지역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 인권의 개념과 인권법, 기본권제한 문제, 경찰관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현황 및 주요사례, 지역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서의 인권보호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범죄피해자 대한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문제제기,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권리, 현행 범죄피해자 관련 법령, 보호제도 실태, 외국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 등을 검토하여, 지역경찰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문제제기, 피의자 개념과 지위, 현행 피의자의 권리, 미란다원칙 고지, 피의자 방어권 고지(피의자 권리 고지), 현행 체포 관련 관례 및 보호제도 등을 검토하여, 지역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소년범에 대한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문제제기, 소년의 개념, 청소년범죄의 특징, 소년범죄의 현황, 소년보호 관련 법령, 소년보호 법제의 비교, 보호제도 실태 등을 검토하여, 지역경찰관의 소년범에 대한 보호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검토한 범죄피해자 대한 인권보호,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소년범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경찰관의 직무집행 방안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각종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학계에서 발표된 학위논문 및 국내외 학술잡지에 실린 논문, 그리고 정부발간 정책자료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였다.

둘째,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검색 활용하고, 범죄피해자·피의자·소년범 등에 관련한 통계자료 등은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활용하였다.

셋째,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법적문제는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하였다.

## 제2장 지역경찰과 인권의 이론적 검토

### 제1절 지역경찰의 개념과 임무

#### 1. 지역경찰의 개념

지역경찰이란 경찰의 업무별 구분에 의한 한 분야로서 일정한 담당구역을 가지는 지구대를 활동거점으로 하여 경찰관이 범죄 및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순찰을 실시함과 아울러 발생하는 각종 경찰사건·사고에 즉응하는 활동과 경찰민원을 처리하고 범죄정보 및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수집 해결하도록 하는 전문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포함하는 일반적이고 초기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말한다.<sup>2)</sup> 지역경찰제는 경찰서 관할구역을 인구·면적·우범지역·범죄 발생요소 등 대민치안요소와 주민생활권·주요도로접

---

2) 박현호, 범죄예방론, 경찰대학, 2007, 353면.

근성·교통망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알맞게 기존 파출소 3-4개를 통합 관할범위를 넓혀 기존의 시설과 장비·인력을 활용하여 순찰과 단속, 신고출동 등 현장치안활동을 중점 수행토록 운영하는 체제이다.<sup>3)</sup>

## 2. 지역경찰의 임무

지역경찰은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는데 있다.<sup>4)</sup> 이를 위해 지역경찰은 부단한 범죄예방활동을 함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수행하던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자(Law Enforcement Officer)를 넘어서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을 위한 매개자로서 지역치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 및 원활한 관계유지에 노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즉 부단한 범죄예방활동을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일정한 초기적 범위의 임무를 수행한다. 지역경찰의 임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첫째, 지역경찰은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경찰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여기에 대응하여 합당한 경찰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3) 우리나라 지역경찰제는 2003. 9. 17 경찰청 훈령 제409호,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2003년 10월 15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지역경찰관서는 지구대 826개소·파출소 544개소로 총 1,370개소이다. 그리고 치안센터는 1,618개소이다(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 생활안전; <http://www.police.go.kr>).

4)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경찰청 훈령 제514호, 2007. 10. 30, 일부개정),

5) 박현호, 앞의책, 355-356면.

둘째, 지역경찰은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경찰관은 순찰지구대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경찰업무 전반에 걸친 초기적 단계를 지역경찰근무에 의하여 수행하며, 전담경찰의 업무 중 일정한 범위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지역경찰의 임무가 초기적·즉응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지역경찰활동 자체의 목적성이 경시되어 전담경찰에 종속되어 보조역할만을 수행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범죄예방기능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지역경찰의 독자성과 전문성·중요성이 한층 높아져 가고 있다.

셋째로 지역경찰은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경찰의 궁극적 임무는 주민 일상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임무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지역경찰이 지구대를 거점으로 지역 주민의 곁에서 상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주민의 일상생활의 안녕을 보호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전담경찰의 경우보다도 더욱 본질적이며 직접적인 모습으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특별한 사태나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경찰은 초동조치만을 취한 뒤 그 사건을 전담경찰에 인계하고 다시 주민 일상생활의 안전과 평온의 유지활동으로 복귀한다.

## 제2절 지역경찰관의 근무

### 1. 순찰 및 거점근무

순찰이란 경찰관이 관내의 일정한 지역을 순회 시찰하는 활동으로 지역경찰관의 근무 중에도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방법활동의 가장 대표적이며 기본적인 근무는 순찰근무이다. 지역경찰관은 순찰 중 현장출동, 불심검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현행범 또는 피의자 체포, 위험발생의 방지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방법홍보, 우범자 관찰보호 및 수배 또는 제사범의 단속, 관내상황

의 관찰 및 파악, 미아·가출인의 발견 기타 순찰 중 인지한 사건의 취급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경찰의 순찰근무에는 순찰수단에 따라 112순찰, 도보순찰, 오토바이순찰 등이 있다.<sup>6)</sup> 차량에 의한 112순찰은 담당 구역 내 범죄취약지 등 넓은 지역을 순찰하며 112신고사건 접수시 높은 기동성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보존 등 초동조치를 한다. 특히 차량에 의한 112순찰은 위력순찰로 가시적 방법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도보순찰은 우범지역·사건사고 다발지역·이면목길·인파밀집지·터미널·관광지 등 취약지에 취약시간대에 집중배치 지역주민과 접촉하면서 경찰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높이는 순찰한다. 도보순찰은 순찰의 원형이자 예방효과가 큰 순찰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토바이순찰은 승용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 등 우범 주택지역에 중점 배치하고, 교통혼잡 시간대 및 교통체증으로 112순찰차 운영이 곤란한 지역에 적극 활용한다. 오토바이 순찰도 112신고 및 신속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 상황발생시 출동요소로 활용한다.

지역경찰관은 관내 우범지역, 범죄취약지, 최근 범죄발생지 등의 거점 에서 고정 또는 유동하면서 통행인과 차량에 대한 관찰 및 검문검색을 통한 근무지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거점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주민에 대한 정중하고 친절한 예우,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 및 경계 철저, 지속적인 치안상황 확인 및 신속 대응 등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현장출동 초동조치 및 불심검문

지역경찰은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하고,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찰은 112기동순찰근무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6) 그 밖에도 순찰은 순찰 수단에 따라 헬리콥터순찰·기마순찰·자전거순찰·인라인스케이트순찰 등도 있다. 헬리콥터순찰이나 기마순찰은 일반적으로 별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자전거순찰은 저렴한 경비로 좁은 골목길 등 순찰에 좋고, 인라인스케이트순찰은 넓은 공원 등 차량 통행이 없는 지역 등 순찰에 장점이 있다.

있다. 112기동순찰 근무자는 112신고사건 등과 상급 경찰관서 및 지구대에서 처리를 지시한 사건사고에 대해 타임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한다. 112순찰이외의 출동요소는 오토바이순찰, 도보순찰, 상황근무자 순으로 한다. 그리고 순찰요원은 현장출동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112신고센터 등에 보고하고, 현장 조치 시 다수의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12센터 및 지구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인접 순찰요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다. 순찰요원은 지원지시를 받은 경우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지원요청이 없더라도 현장조치중인 순찰요원을 지원한다.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관은 현장상황 파악 보고, 현장보존 범위의 결정, 목격자 등 파악, 수사자료의 보존 등의 초동조치를 취한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의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나 의심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조사하는 것을 말하며,<sup>7)</sup> 이러한 불심검문은 경찰과 시민이 직접 접하는 최일선 경찰작용의 하나로 지역경찰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좌우하는 대민접점 지역경찰 활동이다. 불심검문의 내용에는 정지후 질문권, 동행요구권, 흉기소지여부조사권 등이 있으며 동행 및 답변강요금지, 동행시 소정절차경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방법진단 및 경찰방문

방법진단이란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관내 주택, 고층빌딩,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및 상가·여성운영업소에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 및 안전설비의 설치상황, 자위방범역량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거나 경찰력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활동으로,<sup>8)</sup> 지역경찰관은 필

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1항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8) 경찰방문 및 방법진단 규칙 제2조 제2항(경찰청훈령 484호 전문개정 2006. 4.18).

요시 또는 정기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진단을 실시한다.

경찰방문이란 경찰관이 관할구역내의 각 가정, 상가 및 기타 시설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선도,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및 안전사고방지 등의 지도·상담·홍보 등을 행하며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주민의 협조를 받아 방법진단을 하는 예방경찰활동으로,<sup>9)</sup> 지역경찰관은 범죄예방 등의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민원사항을 청취하며 예방경찰상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경찰방문을 실시한다.

#### 4. 협력방법활동 및 방법홍보활동

지역경찰관은 지역 주민이 마을 단위로 조직하여 관할지구대(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맺고 방법활동을 하는 봉사 조직인 자율방법대 및 시민경찰학교, 부녀방법봉사대 등 자율방법조직을 운영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활동하거나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 순찰활동과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협력방법활동을 실시한다. 지역주민의 자율방법조직이 범죄예방을 위한 현장치안 참여 확대로 주민과 지역경찰관과의 유대가 강화되어 고품질의 공동치안을 생산한다. 아울러 지역경찰관은 관할지역 내 금융기관, 상가, 주택가 등을 순회하면서 업주나 관리인을 상대로 비상벨, CCTV, 경비시설 등을 설치하게 설득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관할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각종 민간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아파트 및 상가경비원, 주차장관리인, 청원경찰 등을 상대로 근무요령이나, 사건사고 대처요령 등을 교육한다.<sup>10)</sup> 특히 사실상 방법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할 구역 내의 민간경비업자의 영업소, 민간경비업무 대상시설 등을 방문하여 범죄에 대한 정보교환 등 민간경비와의 유기적인 협력방법체제를 구축한다.

지역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9) 앞의 규칙 제2조 제1항.

10) 박현호, 앞의 책, 415면.

할 관내 치안활동 및 대책, 최근 발생범죄의 유형과 수법, 자위방범체제 및 범죄 신고요령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방법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홍보의 수단으로는 지구대(파출소)별 전광판 활용 및 현수막 게시, 입간판 설치, 치안 소식지·홍보전단·노약자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책자형 만화 등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지역경찰관이 지역주민을 접촉 직접 전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문안 등을 게재한다. 또한 방법홍보반을 구성 아파트단지 등을 순회 구내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노인정, 부녀회, 반사회, 극장 막간방송, 유선방송, 전광판, 지역신문 등에 홍보한다. 그리고 지역경찰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집하는 한편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 5. 수사·교통·경비업무 등

지역경찰관은 관할구역을 단위로 경찰업무 전반에 걸친 초기적 단계를 지역 경찰근무에 의하여 수행하며, 전담경찰의 업무 중 일정한 범위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수사·교통·경비·단속업무 등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수사업무에 있어서 지역경찰관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범죄 현장보존과 증거수집 조치를 취하고 범인을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지역경찰관이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장과 범죄 실황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와 수사를 행하고 해당사건을 수사 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한다. 또한 지역경찰관은 중대한 사건 등 발생으로 긴급배치시 지정장소 등에서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교통업무에 있어서 지역경찰관은 관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보존 및 관계인을 확보하고 주변 교통정리와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사건을 교통사고 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한다. 그리고 지역경

찰관은 순찰근무 중 도로상의 교통정체나 장애 등 상황을 발견시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비업무에 있어서 지역경찰관은 다중범죄진압, 대간첩작전, 경호경비, 비상경비, 집회 및 행사의 경비, 기타 각종 경비상황 발생시 경찰관서장의 지시에 따라 경계 또는 진압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지역경찰관은 관내에서 화재, 폭발물, 풍수해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방재조치를 취하고 부상자 및 이재민 등을 구호하며 교통정리와 도난 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경찰사범의 단속에 있어서 지역경찰관은 근무 중 제 경찰법규 위반사범을 인지하였거나 신고 받았을 때에는 이를 단속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지역경찰관은 검거한 피의자 등에 대하여 자해 및 도주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하게 호송하여야 하고, 호송 중에는 가혹행위나 욕설, 반말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절 인권과 지역경찰관의 직무집행

### 1. 인권의 개념과 인권법

인권 혹은 인간의 권리(human rights, Menschenrechte, droit de l'homme)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로서, 이러한 인권의 관념은 계몽주의적 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 등 근대적 사상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천부인권론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sup>11)</sup> 천부인권론은 미국 Virginia주 권리장전, 프랑스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된 이래 인류보편의 질서로 자리 잡았다. Virginia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로 표현된 것이 독일에서는 기본권(Grundrecht)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

1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8, 259면.

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생래적·천부적권리(자연권)를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권 등도 인간의 권리와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 인권의 일반적 특질은 다음과 같다.<sup>12)</sup> 첫째, 인권의 보편성으로 기본적 인권은 인종·성별·신앙·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이다. 둘째, 인권의 천부성으로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셋째, 인권의 항구성으로 기본적 인권은 일정기간에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영구히 보장되고 또 박탈당하지 아니하는 항구적 권리이다. 넷째, 인권의 불가침성으로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향유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은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며,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고 본다.

현대 핵심적인 국제인권법은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Human Rights)으로 유엔헌장의 인권관계 조항들,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있다. 국제인권장전 외에도 많은 국제인권조약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을 위한 국제협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대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 적용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285면.

나 차별의 방지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미주인권협약,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등이다.<sup>13)</sup>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인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더구나 ‘확인하고’ 라는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천부인권의 자연적 상태의 권리로 기본권을 보고 있다.<sup>14)</sup>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sup>15)</sup>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 불가피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제적 인권기준과 헌법 및 법률에 위반한 것이다.” 라고 공권력 행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권관련 법령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이다.

## 2. 기본권제한과 지역경찰관의 직무집행

우리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13) 이석용 외, 국제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20-22면; 정인섭,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 8-11면.

14) 김철수, 앞의 책, 262면.

15)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제시하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경우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의한 제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제시하는 일반 기본권제한의 원리는 법률로써 하되 첫째로 공공복리에의 해당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셋째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되어서는 안되는 침해금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sup>16)</sup> 또한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라고 판시하여<sup>18)</sup> 헌법재판소도 기본권 제한에 관한 입법권의 한계로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본질적내용의 침해금지 원칙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은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며,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순찰활동과 거점근무·검문검색 통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신고사건 등 각종사건사고를 초동진압 및 수사·교통의 단속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직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지역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

16)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헌집1, 387).

17)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8) 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8(헌집4, 853-889).

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지역경찰관은 최일선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자로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직무집행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인권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을 보호하는 인권경찰이 되어야 한다.

### 3. 경찰관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현황 및 주요사례

#### 가.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및 처리현황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서 헌법 제11조에 정한 인권침해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말한다(관련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규제규칙 제2조 제1항).<sup>19)</sup>

다음의 [표 2-1]은 2001년 11월 25일(국가인권위원회설립)에서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기관별 접수현황을 보면 전체 23,101건 중 구급시설 관련이 9,984건으로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이 5,092건으로 22%, 기타국가기관이 5,060건으로 21.9%, 보호시설이 1,290건으로 5.6%, 군대가 452건으로 2%이다.

처리현황을 보면 ‘수사의뢰’ 건수는 전체 12건 중 경찰이 6건으로 50%, 군대가 3건으로 25%, 검찰이 2건으로 17%, 구급시설 관련이 1건으로 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권고’ 건수는 전체 605건 중 경찰이 205건으로 34%,

1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집, 2004, 262면.

구급시설이 148건으로 24%, 기타국가기관이 136건으로 23%, 보호시설이 69건으로 11%, 검찰이 30건으로 5%, 군대가 17건으로 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징계권고’ 건수는 전체 45건 중 경찰이 27건으로 60%, 구급시설이 11건으로 25%, 기타국가기관이 5건으로 11%, 보호시설이 1건으로 2%, 검찰이 1건으로 2%를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권침해 접수 처리에 있어서 경찰이 수사의뢰, 권고, 징계권고 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인권과 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표 2-1]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sup>20)</sup> (단위: 건)

구분	접수	종결	수사의뢰	권고		징계권고	긴급구제	합의종결	각하			조사중지	조사중
				고발	고발				각하	이송	기각		
합계	23,101	21,571	12	605	42	45	5	234	14,238	623	5,599	153	1,530
검찰	1,215	1,143	2	30	1	1	2	2	849	15	228	13	72
경찰	5,092	4,812	6	205	4	27	2	155	2,897	87	1,381	46	280
구급시설	9,984	9,532	1	148	1	11	0	22	5,986	461	2,836	59	452
보호시설	1,290	911	0	69	32	1	0	8	427	23	334	15	379
군대	452	432	3	17	1	0	0	5	351	4	47	3	20
가짜타관	5,068	4,741	0	136	3	5	1	42	3,728	33	773	17	327

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7, 99면.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참조  
 제작성: 접수 합계(23,101건)는 합의권고 5건(구급시설1건, 군대1건, 기타국가기관3건), 조정 1건(보호시설 1건), 법률구조요청 9건( 경찰 2건, 구급시설 6건, 보호시설 1건) 등이 포함된 통계이다.

## 나. 경찰관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주요사례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한 인권침해분야 진정사건 중 수사개시의뢰, 권고 등 주요사례(특히 지역경찰관과 관련될 수 있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1)</sup>

### 1)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소속, 성명 미고지 관련(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불심검문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교육 할 것을 권고.

### 2)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신분증 미제시 관련(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불심검문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3) 강제임의동행 관련 인권침해(권고)

○○경찰서 ○○치안센터 경찰관이, 진정인이 임의동행에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연행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되는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 4) 경찰관의 체포시 폭행 관련 인권침해(권고)

○○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욕설을 하고 구둑발로 차고 밟으며 폭행하고 진정인을 경찰차 뒷자석에 태운 뒤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

21)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앞의 책, 101-106면.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경고조치 및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 **5)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권고)**

진정인이 성폭력을 당해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상담하고 온 이후 전화통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부부간의 신뢰상실, 가정 파탄, 가정폭력 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죄책감, 모멸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 **6) 경찰관의 피의자 폭행 관련 인권침해(권고)**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폭언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진정인을 훈계하고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뺨을 때린 것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 **7) 경찰관의 수색시 적법절차 위반 관련 인권침해(권고)**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영장 없이 강제 수색했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 **8) 경찰관의 부당한 전자충격기 사용관련 인권침해(권고)**

경찰관이 진정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한 후 수갑을 채워 의자에 묶어 두고 전자충격기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청장에게 모든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

### 9) 경찰관의 과도한 체포행위 관련(권고)

진정인은 새벽에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음식을 태워 환기를 시키고 잠을 자려는데 소방관이 집안 확인을 요구해 아무 일이 없으니 돌아가라 하자, 잠시 후 경찰관이 또 집안 확인을 요구해 경찰관 1명만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여러 명이 함께 들어오려 하여 현관문을 막아선바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며 부인과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정인의 목을 졸라 수갑을 채우려 했다는 내용으로, 현행법 체포라도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4. 지역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와 관계인 인권보호

지역주민의 ‘지역수호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경찰관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인권 수호자로서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항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충돌이 불가피한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일정한 담당구역을 가지는 지구대(파출소)를 활동거점으로 하여 범죄 및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순찰을 실시함과 아울러 발생하는 각종 경찰사건·사고에 즉응하는 활동과 경찰민원을 처리하고 범죄정보 및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수집 해결하도록 하는 전문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포함하는 일반적이고 초기적인 경찰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지역경찰관은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경찰작용의 성격상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가장 높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에서 인권과 관련된 국민과의 최초 대면은 범죄 신고사건

을 접수하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는 지역경찰관에 의하여 대부분 이루어진다. 경찰은 국민이 범죄 신고를 하였을 때 112신고센터를 운영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관이 112순찰차로 최단시간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제는 「범죄신고는 112」라는 표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지역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는 112 범죄신고 시스템은 지역주민과 경찰활동을 긴밀히 연결하는 국민의 비상벨이 되었다.<sup>22)</sup> 112 범죄 신고는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고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약취유인·도박·재물손괴 등 일반 형법범은 물론 음주 인근소란·금연장소 흡연·오물투기·노상방뇨 등의 경범죄와 안전운전불이행·중앙선침범·과속·신호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안전거리미확보 등의 교통범죄, 그 밖에 각종 특별법범의 범죄 신고사건이 관할 지구대(파출소) 112순찰근무 지역경찰관에게 하달되면 즉시(3분 이내) 현장에 도착 범인 검거 등 초동조치를 하게 된다. 112 신고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표 2 - 2]는 1999년에서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지난 8년간 “연도별 112 신고 건수 증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5년도에는 500만건 이상이 신고 되었고, 2006년도에는 540만건 이상이 신고 되었다. 지구대의 신고사건은 112신고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전화신고 및 방문신고 등이 있으므로 실제 신고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 다음의 [표 2 - 3]은 “2006년도 시·도별 112 신고 건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6년도 서울시 112 신고건수를 보면 1,878,141건으로 이를 1개지구대(지구대 146개, 파출소 18개소)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32건의 신고사건이 매일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다.

22) 112의 연혁을 살펴보면, 1957년 7월 「112번 전화로 일일이 신고하자」는 취지에서 최초 112 비상통화기 설치(서울, 부산), 1958년 112 비상 통화 전국에 확대, 1987년 11월 서울시경 전국최초로 C<sup>3</sup> 제도 운영(전용 무선망 구성 및 순찰차 98대, C<sup>3</sup>란 지휘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을 통합한 대응시간 단축 System), 1989년 4월 서울시경 C<sup>3</sup> 체계 전산화, 1990년 4월 112기동 순찰대 발대, 1990년 11월 C<sup>3</sup> 체계를 112체계로 명명, 1994년 5월 112관련업무 통신에서 방법기능으로 이관, 1995년 3월 지령실을 112신고센터로 명칭변경, 2004년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DS : Instant Dispatch System) 운용, 112순찰차에 위치확인시스템(GPS) 단말기를 설치(인천지역 시범구축을 시작으로 서울 및 6대광역시 구축).

서울시 1개지구대 1일 1개조 근무인원은 20명 내외이고 112순찰차는 3대이며, 파출소는 1일 1개조 근무 인원 10명 내외이고 112순찰차는 1대이다. 서울시 소재 1개지구대(파출소)에서 평균 매일 32건의 신고사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울 등 대도시 지역경찰관은 매일 이러한 신고사건 초동조치 근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지역경찰관의 직권이 발동되는데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등의 신고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sup>23)</sup>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범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역경찰관의 범죄피해자, 발견자, 목격자 등 범죄신고자의 인권보호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서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여지는 상당히 높다고 본다. 또한 지역경찰관이 사회적 약자인 소년범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서 비행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호자의 입회, 심리사 등 전문가의 참가 등이 확보되지 못하여 조사후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지역경찰관의 근무중 국민과의 대면접촉이 가장 많은 112 신고사건 현장출동 초동조치 등 사건 처리에 있어서 범죄피해자·피의자·소년범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표 2-2] 연도별 112 신고 건수 증가 현황<sup>24)</sup> (단위: 건)

23)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지난 30년간 1977년 506,545건에서 2006년 1,829,211건으로 약 3.6배 증가하였고, 검거건수는 1977년 448,168건에서 2006년 1,569,547건으로 약 3.5배 증가하였다(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7. 12, 27면).

24) 경찰청, 제50호 경찰통계연보 2006, 2007, 108-109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접수 건수	2,594,776	3,178,190	3,396,749	3,522,583	4,078,925	4,692,039	5,012,017	5,408,884
증가 율	26.9 (%)	22.5 (%)	6.9 (%)	3.7 (%)	15.8 (%)	15.0 (%)	6.8 (%)	7.9 (%)

[표 2-3] 2006년도 시·도별 112 신고 건수 현황<sup>25)</sup> (단위: 건)

계 \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5,408,884		1,878,141	492,375	223,416	326,428	110,262	140,623	166,23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14,721	106,001	152,248	118,541	151,338	97,829	139,990	232,221	58,470

## 제3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 제1절 문제의 제기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상처, 경제적 손해 혹은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와 고통을 당한 사람이므로 국가는 특별히 피해자를

25) 경찰청, 앞의 책, 108-109면.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시 되기는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누락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본장에서는 누락된 피해자보호의 기본계획이나 정책제시 보다는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고사건을 접수하고 피해자와 최초대면 초동조치를 함에 있어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역경찰관은 항상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즉응체제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역경찰관이 범죄 신고사건을 접수 하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 보고하고 범인 검거 등 제반초동조치를 하게 된다. 이러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 하는 경찰권이 발동되는데,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등 범죄 피해자들은 그들이 겪으면서 피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1차적 피해와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는 등 그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리고 신고자, 발견자, 목격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도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는 피신고인과의 직접적인 원한이 없어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신고를 하지 않고도 피신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보복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해야할 지역경찰관이 신고사건 초동조치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부주의, 편견, 거친 언행, 피해자 관련 비밀유출 등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상처, 고통을 주는 사례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함으로써 이들의 인권보호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제2절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권리

## 1. 범죄피해자의 개념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규정 의하면 "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6)</sup>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란 용어는 라틴어의 Victim 에서 유래되었는데 범죄피해자학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sup>27)</sup> 최협의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법익이 침해 또는 위협된 자를 말한다고 한다. 이는 보호법익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체가 된 자를 포함하며,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된다. 협의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피해자를 범죄자의 상대방으로 인식하지만 반드시 법률상의 관계에서 논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역시 형법상의 것만이 아니라 작위적으로 형법에서 제외된 경우와 법률의 불비에 의해 목살되고 있는 범죄현상도 그것이 사회생활상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며 유해한 경우에는 범죄의 테두리에 포함시킨다. 광의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형법으로부터 도출하는 대신 형법상 의미 있는 충돌이나 갈등 또는 분규를 실마리로 하여 이와 관련된 일정범위 내에서의 피충격자를 피해자로 본다. 최광의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피해자의 개념을 최대한 넓게 인정하여 피해자에는 에너지에 의한 피해자, 산업재해에 의한 피해자, 자연계에 있어서의 피해자도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 노동재해 등에 의한 피해자도 포함된다고 한다(B. Mendelsohn 이 대표적인 제창자).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실정법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 범죄피해

26) 범죄피해자보호법[제정 2005.12.23 법률 제7731호] 제3조제1항1호.

27) 최인섭외,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6-03, 2006, 41-42면.

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와 그 가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범죄피해의 내용은 범죄피해자가 겪으면서 피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1차적 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sup>28)</sup> 1차적피해(직접적 피해)란 살인·강도·강간·폭행·상해 등의 강력범죄나 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로 신체적 고통을 받고, 때로는 불면증, 두통, 식욕장애 등 신체적 피해를 받는다. 그리고 사기·절도·횡령·배임·재물손괴 등의 재산범죄 피해자는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한편 범죄피해자는 공포·긴장·분노·충격·환청·환각 등의 피해를 받고 악몽과 자존심 상실 등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입는다. 이와 같이 신체적·경제적·정신적으로 범죄에 의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 2차적피해란 피해자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 범죄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통틀어 ‘2차적피해’라고 한다.

## 2. 범죄피해자의 권리

피해자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증진되어 1980년대부터는 유럽평의회와 UN 등의 국제기구도 각 회원국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나섰다. 이 후 각국의 정부와 민간단체는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sup>29)</sup>

28) 경찰청, 범죄백서, 2007, 222면; <http://www.police.go.kr>(공개하는 정보자료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 안내), 2008. 10. 02. 방문; 1차피해자화, 2차피해자화 등으로 ‘피해자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피해자화(victimization)’라는 용어는 1967년 미국의 법집행과 사법행정예 관한 대통령위원회가 제출한 「자유사회에 있어서 범죄의 도전」(The challenge of crime in free society)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73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된 범죄피해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반화되었고, 일정한 원인으로부터 범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범죄화(criminalization)에 대응하는 개념이다(최인섭외, 앞의 책, 44면, 각주7).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sup>30)</sup> 그리고 공정한 처우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피해회복의 권리, 의견을 진술할 권리, 지원을 받을 권리, 재피해를 입지 아니할 권리 등이 있다고 본다.<sup>31)</sup> 또한 사건해결에 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사건 해결 또는 범죄자 처리와 관련하여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즉, 어느 누구도 피해자에게 범인 검거 또는 범죄사건 해결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에 협조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범죄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책임은 국가에 귀속하므로 어떠한 형식으로든 피해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다.<sup>32)</sup>

## 제3절 범죄피해자 관련 법령과 보호제도

### 1. 범죄피해자 관련 법령

우리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라고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5. 12. 23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기본이념) 제1항은

29) 김용세·김재민,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와 경찰관 교육방안, 치안정책연구소 usrn보고서 2006-02, 2006, 19-20면.

3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

31) 최인섭외, 앞의 책, 46면.

32) 김용세·김재민, 앞의 논문, 21면.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2항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3항은 “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보장 등)는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2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규정들로서는 고소권·고소취소권(동법 제223조),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통지(동법 제258조 제1항), 불기소이유를 고지받을 권리(동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의 권리(동법 제 제260조 제1항),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동법 제294조의 2 제1항) 등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범죄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 규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0호]상의 피해자 보호 규정으로는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4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80호]상의 피해자 보호 규정으로는 동법 제4조 제2항에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아동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18조 제1항에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는 “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사적비밀의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 2. 범죄피해자 관련 보호제도

현행 범죄피해자 관련 보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죄피해자구조법<sup>33)</sup>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있다(동법 제2조 제3조 참조). ②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sup>34)</sup>에 의하여 국가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sup>35)</sup>에 의하여 제18조 제2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동조 제3항 제3호·제4호(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 동조 제4항(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 및 제22조(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33) 범죄피해자구조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66호].

3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19호].

3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04호].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sup>36)</sup>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등과 같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무보험차량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가 있다(동법 제30조 이하). ④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p>37)</sup>에 의하여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도가 있다. ⑤ 긴급복지지원법<sup>38)</sup>에 의하여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 제도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이다. 즉,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등이다. ⑥ 그 외 소액사건심판법<sup>39)</sup>에 의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채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소액심판제도가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sup>40)</sup>에 의하여 폭행·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

3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전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65호].

3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38)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한시법:2011.3.25>

39) 소액사건심판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7호]

4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05.12.14 법률 제7728호]

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으며, 민사소송법<sup>41)</sup>에 의하여 채권채무, 대여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지급명령제도가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가해자 불명인 노상강도·폭행치상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치료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가 있다.

한편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피해신고자 및 고소인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증거 수집 대상인 참고인이 된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나 재항고(검찰청법 제10 제1항), 일정한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헌법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을 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록의 열람·등사청구권,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청구권이 인정된다.

### 3. 경찰의 피해자 보호

#### 가. 외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

일본의 경우 1995년 범죄피해구원기금의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관한 연구회” 등을 통하여 “피해자 대책 요강”이 책정되어 1996년부터 전국 경찰에 조직적인 피해자 지원이 실시되었다. “피해자 대책 요강”에 의해 실시하는 피해자지원 시책은 ①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② 2차 피해의 방지 및 경감, ③ 정신적 피해의 회복, ④ “지정피해대책요원제도”의 실시, ⑤ 재피해의

41) 민사소송법[일부개정 2007.7.13 법률 제8499호]

방지, ⑥ 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다.<sup>42)</sup> 그리고 특별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성범죄피해자대책)대책으로 1996년부터 모든 경찰본부에 성범죄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1996년에 “피해자연락실시요강”이 제정되어 각 경찰서에 “피해자연락담당계”를 설치하여 성범죄와 신체범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체포, 기소 등의 수사상황 및 피의자의 처분상황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는 피해자에게 보복의 위험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파악과 필요한 예방, 경계활동, 범의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며, 재피해의 위험성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방법기구를 대여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자동긴급통보장치 등을 설치하는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sup>43)</sup>

미국의 경우 경찰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의 내용은 각 주마다 상이하지만 미국경찰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sup>44)</sup> ① 범집행 및 수사절차에 대한 교시, ② 위기개입 및 심리적인 초동조치의 제공 또는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타 기관에의 부탁 및 동반, ③ 부상 입은 사건에 있어서 긴급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반, ④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서비스 전문가와 연락, ⑤ 피해자의 헌법상 및 법률상의 권리에 대한 교시 및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⑥ 범죄의 결과로서 개인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의 안전성 확보, ⑦ 지원이 필요한 상황여부 또는 현재 지원상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의 접촉에서 24-48시간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직접 피해자와 접촉할 것, ⑧ 긴급한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단체에 대한 신속한 부탁을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할 것 등이다. 이외에 특별한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로 성범죄특별반, 아동지원센터, 고령 피해자를 위한 지역과 형사사법기관의 연대활동, 살인피해자 유족에의 대응(사망통지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

42) 太田祐之, 被害者に對する支援-警察の立場から, 「ジュリスト」1163, 1996, 96면;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2, 141면.

43) 木下外晴, 警察の姓犯罪被害者對策, 捜査研究, 1999, 18면; 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146-147면.

44) National Victim Assistance Academy (1988) "1988 NVAA Text Book" Ch6; 송기오·강경래, 앞의 책, 71-72면.

다.

영국 경찰의 경우 범죄피해자 일반에 대하여 수사 등 경찰활동의 각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 및 요처에 대응한 지원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VS(Victim Support)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사적 기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1996년 ‘피해자헌장’에서는 경찰은 통보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함은 물론 피해자에게 담당경찰관의 이름 및 전화번호 그리고 안내서인 ‘범죄피해자’의 교부 등에 의한 경찰수사 및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범죄방지에 대한 조언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피의자의 체포 등 사건처리의 진행상황, 공판일자 및 최종적인 처분, 범인석방시의 통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VS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VS에 위임하는 ‘자동적 위임’ 제도가 채용되고 있다.<sup>45)</sup> 즉, 경찰은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sup>46)</sup>에 대하여 매일 지역 VS의 상근직원 등과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살인, 교통사고사, 성범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 등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VS에 위임할 수 없다. 지역 VS(Victim Support)의 관할 구역은 경찰과 긴밀한 연계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의 관할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 나. 우리나라 경찰의 피해자 보호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한 피해자대책실을 2004년 경찰청에 설치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의 제정 · 범죄수사규칙상 피해자보호지침의 삽입 · 피해자 서포터제도의 시행 ·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상황 통지제

45) 安田貴彦 「イギリスにおける警察による被害者政策の現状」, 『警察學論集』 49-1, 1996, 143-147면; 송기오 · 강경래, 앞의 책, 107-108면.

46) 방화, 폭행(가정 내 폭력은 제외)현주건조물체의 불법침입, 기물손괴, 단순폭행, 인종적 편견에 의한 괴롭힘, 소액의 개인적인 사기, 절도, 날치기 및 유사범죄 등.

도 정비·이동식 피해자 조사실의 운영·화상 대질조사제도 시행,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체제 구축, 절도사건 3회 방문 처리제도, 즉시민원제, 우편진술제, 수사민원상담활동, 피해자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 시행 등으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에 있어 민간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도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진술녹화실 운영으로 진술의 최소화 및 2차피해방지를 하고 있다. 2003년 「성폭력범죄의처벌과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진술녹화가 의무화된 후 2006년 10월 27일 법률의 재개정으로 진술녹화의 의무대상이 16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 12월 현재 전 지방경찰청, 경찰서, ONE-STOP지원센터 등 269개소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2007년에는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571건의 진술녹화를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반복 출석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일반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청소년사범·성매매·청소년성매매 등 타범죄의 경우에도 총 7,997건의 진술녹를 실시 인권보호를 기하고 있다.<sup>47)</sup>

## 제4절 지역경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 1. 신고접수와 피해자 보호

지역경찰관은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여기에 대응하여 합당한 경찰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지역경찰관

47) 경찰청, 2008 경찰백서, 95-96면.

이 최초 범죄 신고사건을 접수하면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생명·신체·재산 등을 침해받아 당황한 피해자를 안도하게 한 뒤 선입견 없이 필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청취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되 친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범죄 신고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 신고접수는 주로 112신고 시스템에 의하여 접수되거나 일반전화신고 및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지역 경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신고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sup>48)</sup> ① 피해자는 신고당시 몹시 당황한 상태이거나 생명·신체·재산 등을 침해받아 의지할 곳은 경찰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한다. ② 경찰관 스스로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피해자를 안도하게 한 뒤 필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청취하고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한다. ③ 과거 경험이나 선입관에 의한 주관적 판단으로 사건의 진상을 잘못 청취하면 이후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관할 외 사건은 관할기관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초동조치를 실시한다.

## 2. 현장출동 초동조치와 피해자 보호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24시간 범죄 즉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경찰관이 최초 범죄 신고사건을 접수하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 보고하고 범인 검거 등 제반초동조치를 하게 된다. 지역경찰관이 신속하게 범죄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면, 그만큼 피해자 구조, 피의자 체포, 피해품 회수, 중요한 증거와 목격자 확보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범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빠른 시간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인근 근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

48)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2007, 47면.

다. 49)

① 상황에 따른 출동방법을 고려하여 노출·비노출 출동여부를 판단한다. 순찰차를 이용할 것인가 일반 승용차를 이용할 것인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켜 것인가 현장에서 하차할 것인가 아니면 인근에서 하차 도보로 이동할 것인가 등을 판단한다. 예컨대,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짐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무복보다는 사복, 순찰차보다는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관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구호활동을 전개하며 인명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는 금물이다. 예컨대, 변사사건의 경우, 시체를 처리함에 있어 사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정중히 취급하며, 변사자의 가족에게도 그 심정을 헤아려 공손하게 대하고 지나치게 사무적인 언행을 지양한다. ③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 도착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하며 현장은 가능한 한 원상태로 보존한다. ④ 피해사실 청취시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해결의 의지를 보여 신뢰감을 부여한다. 예컨대, 강·절도 현장에서 “도둑놈이 증거를 남겨 놓았겠어요?” 라며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금물이다. ⑤ 피해자에게 피해자 안내서를 교부하고 피해자가 각종 제도 및 지원 단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통합 피해자 안내시스템 활용). ⑥ 범죄 신고자나 목격자에 대한 보복, 인질강도 및 약취유인, 가정폭력사범 등의 경우 피해자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다. ⑦ 피해·신고내용에 대한 진술이나 범인식별 등을 위하여 지구대(파출소) 등으로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 동행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한다. 예컨대, 목격자인 신고자 등이 용의자 검거를 돕기 위하여 순찰차에 동승하는 경우에도 용의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원노출 방지 및 신변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⑧ 용의자가 옆에 있거나 112순찰차에 승차시킨 경우, 무전이나 순

49) 경찰청, 앞의 책, 47-49.

찰차 네비게이션 등을 통하여 신고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3. 피해조사와 피해자 보호

지역경찰관은 피해자 조사에 있어서 사전에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여 신뢰감을 조성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인식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기본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경찰관(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연령, 심신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sup>50)</sup>

지역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도 당연히 헌법상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인식하고 조사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협력, 실제적 진실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의 사실에 관하여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종래에는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단순한 증거수집의 객체로서만 인식하거나 형사절차에 협조자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를 강화하는 법령과 제도들이 정비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찰관이 피해자를 형사절차에 있어서 증거방법의 확보 차원에서 피해자를 조사의 객체 및 협조자로만 인식하여,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

50)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 제221조 제3항(동법 제163조의 2준용).

서로 장소를 이동하여 장시간 조사하거나 가해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반복출석·대질 등 행정편의위주의 조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피해자 조사시 사건을 축소·묵살하거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실적보다는 정직과 청렴성이 최우선되는 가치임을 명심하여 적법·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피해품 회수 등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고, 신고사건처리 과정을 상세히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의 신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조사시에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참여시켜 피해자에게도 피의자·피고인에 준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확대되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원칙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 제4장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 제1절 문제의 제기

지역경찰관은 항상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즉응체제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리고 대부분 범인의 검거는 지역경찰관의 순찰과 범죄 신고사건 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인검거의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지역경찰관의 체포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역경찰관이 범죄 신고사건을 접수하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 보고하고 범인 검거 등 제반초동조치를 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경찰권이 발동되는데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긴급을 요하여 긴급체포

를 하는 경우,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단기간의 신체구속(체포)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본다. 특히, 실무현장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 고지(피의자의 권리 고지, 미란다원칙 고지)가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모호하여 자칫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찰권 발동이 불법체포가 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지역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긴급을 요하여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등 피의자 체포와 관련한 인권침해와 인권보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호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제2절 피의자 개념과 지위

### 1. 피의자 개념

지역경찰관은 범죄 신고사건을 접수하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범인 검거 등 제반초동조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지역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단기간의 신체구속(체포)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본다. 다음에서 피의자의 개념과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피의자라 함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Angeschuldete, accused)이라 함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도 피고인이 된다. 피의자는 수사개시 이후 공소제기 이전의 개념이며,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판결확정 이전의 개념이다. 그리고 수형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의자는 공소제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된다. 한편 피내사자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대상자를 말한다.<sup>51)</sup> 이러한 경우는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피의자가 아니다. 그리고 피내사자와 용의자는 모두 내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의자는 절차에 중심을 둔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서 사용하는 법령상의 개념이라 말할 수 있고, 용의자는 실체에 중심을 둔 개념이라 말할 수 있다.

## 2.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의 기본적 지위는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다.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같이 법원의 면전에서 진행되는 공격·방어의 절차가 아니므로 피의자에게는 피고인과 같은 소송주체성이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는다.<sup>52)</sup> 피의자는 절차 당사자가 될 자라는 의미에서 준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sup>53)</sup> 피고인의 기본적 지위는 소송의 주체이며 당사자이나 피의자는 수사의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51) 내사란 보도·풍설·진정·탄원·투서·익명의 신고 등을 통하여 범죄혐의가 있을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내사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본문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내사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위조항을 내사의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사법연수원, 수사절차론, 2005, 36-37면).

52)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50-51면.

53)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185면.

대상으로 수사의 당사자가 아니라 준당사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54)</sup>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필요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체포·구속의 객체로도 되고, 압수·수색·검증을 받는 등 조사의 객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한편 변호인선임 및 선임의뢰권, 증거보전청구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구속의 취소청구권, 변호인 등과의 접견교통권, 진술거부권, 압수·수색·검증에의 참여권 등이 있다. 또한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체포·구속되지 않는 한 피의자신문을 받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피의자 신문의 수인의무는 없다.<sup>55)</sup>

피의자 지위의 발생시점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입건시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입건 이전이라도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상대방을 연행하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 등을 행하여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상대방은 피의자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56)</sup> ‘입건’이란 실무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사건접수부에 사건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고소사건이나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고소·고발이 접수·수리될 때 피의자 지위가 발생하며, 수사기관에 인지되기 전에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한 시점으로부터 피의자의 지위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57)</sup>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검사의 공소제기, 고등법원의 부심판결정,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그 지위가 전환 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여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54) 백형구, 피의자와 피고인의 비교, 고시계, 1992. 3, 120면.

55) 신동운, 앞의 책, 50면; 정웅석·백승민, 앞의 책, 409면.

56) 신동운, 앞의 책, 49면; 대판 2001. 10. 26. 2000 도 2968.

57)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8, 408-409면.

## 제3절 범죄피의자 권리와 보호제도

### 1. 피의자 권리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 수사의 성격상 불법·부당하게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쉽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의자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8)</sup>

첫째, 일반피의자의 권리로는 ①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 전단), ②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 ⑤ 무죄추정의 권리(헌법 제27조 제4항 확장해석), ⑥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증감·변경청구권(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⑦ 증거보전청구권(형사소송법 제184조), ⑧ 압수·수색·검증에의 참여권(형사소송법 제219조, 121조, 145조) 등이다.

둘째,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로는 ① 체포·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동법 제201조의2·동법 제209조·동법 제213조의2·동법 제72조), ② 피체포·구속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동법 제201조의2·동법 제209조·동법 제213조의2·동법 제87), ③ 변호인·가족 등과의 접견교통권(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동법 제201조의2·동법 제209조·동법 제89·동법 제91조), ④ 체포·구속적부심사

58) 신동운, 앞의 책, 51-52면.

청구권(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⑤ 체포·구속취소청구권(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동법 제201조의2·동법 제209조·동법 제93조), ⑥ 체포·구속영장 피청구시 자료제출권(형사소송규칙 제96조 제3항), ⑦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형사소송규칙 제101조) 등이다.

피의자의 권리는 피해자의 권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피의자와 관련된 현행법 체계를 살펴보면, 헌법적 차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 금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영장주의 원칙,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다양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체적인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고지 받을 권리(동법 제200조의5·제213조의2)가 명문화되었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이 보장되고 있으며(동법 제34조), 변호인 이외의 자와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접견 교통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89조·제91조·제200조의5·209조·제213조의2).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등 피의자신문의 주체·절차 및 조서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도 상세한 조문을 두고 있고(동법 제200조·제241조·제242조·제243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등의 사항을 피의자 신문에 앞서 알려주도록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의무화함으로써 피의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동법 제244조의3). 또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등(동법 제243조의2) 수사과정상 변호인 참여권을 명문화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동법 제243조),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동법 제244조),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동법 제244조의2) 등 형사소송법은 수사과정의 적법화 및 투명화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지역경찰관은 이러한 법체계에 부응하여 그 운용에 있어서 피의자 인권 보호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규정과 절차 가운데 지역경찰관이 일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직무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지역경찰관이 범죄 신고사건을 접수 범죄 현장에 출동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긴급을 요하여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등 체포에 따른 피의자 보호를 위한 피의자 방어권 고지(피의자 권리 고지, 미란다원칙 고지) 등 현행 관련 법규와 판례를 중점 검토하고자 한다.

## 2. 미란다원칙 고지와 피의자 방어권 고지

### 가. 미국의 미란다원칙 고지

미란다원칙은 1963년 3월 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가 애리조나 피닉스시내의 한 영화관 근처에서 당시 18세 소녀를 자동차 뒷자리에 밀어 넣고 손발을 묶고선 ‘날카로운 물체를’ 목에 대고 ‘이게 뭔지 알지’ 라고 위협 소녀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 20분간 자동차를 이리저리 몰고 다닌 행위 등으로 마리코파 카운티 법원에서 약취(kidnapping) 및 강도(robbery)죄로,

각 죄마다 단기 20년 · 장기30년의 상대형을 선고 받았고, 애리조나법원도 1965년 4월 만장일치로 하급법원의 유죄판결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1년 후인 1966년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미란다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백으로 얻었던 모든 증거를 무효화시킴으로써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sup>59)</sup> 즉 조사관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볼 때,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경찰의 신문중에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며, 진술거부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조서상에 피의자가 그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의자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심사숙고해서 포기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

1966년 미국 애리조나주의 미란다 판결문 중에서 “누구라도 체포된 경우에 신문에 앞서서 ①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② 본인이 진술할 경우 그 내용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가 있으며, ③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동석시킬 권리가 있으며, ④ 본인이 변호인을 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해 준다는 요지의 경고를 분명하고도 명백한 어휘로 인식시켜야 한다.” *Miranda vs. Arizona*, <384, U.S. 436(1966)><sup>60)</sup>고 판시한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에 대하여 그 자백이 적정절차(due process)에 위배되어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그 증거의 허용성을 부정함으로써 자백의 위법배제법칙이론을 확고히 한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본다.

이러한 미란다 원칙은 1966년 판례가 성립된 이래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불멸의 권리장전이 되었다. 그런데 미국사회의 보수화 경향 속에서 1968년 연방의회는 연방 및 워싱턴 D.C.에서의 형사사건에서는 자백배제 기준의 미란

59) 안경환, 위대한 이름, 추악한 생애 에른есто 미란다(Ernesto Miranda), 사법행정(통권316호), 1987. 4, 99-100면.

60) 안경환, 앞의 책, 99면.

다판결 이전의 임의성 기준을 복구시키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U.C.C. title 18, Section. 이 법률의 명칭은 ‘범죄통제와 안전한 거리를 위한 종합법률’이다), 각 주에서는 미란다법칙 위반으로 인한 자백배제를 불허하는 법안이 몇 번 제안되기도 하였다.<sup>61)</sup> 그러나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집필한 2000년의 ‘Dickerson v. United States 판결(530 U.S. 428(2000))에서 7대 2의 다수의 견은 미란다법칙의 적용을 배제한 1968년 ‘범죄통제와 안전한 거리를 위한 종합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여 미란다법칙의 승리를 확고히 하였다.<sup>62)</sup>

## 나. 우리나라의 피의자 방어권 고지(피의자 권리 고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체포시 피의자의 방어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미란다 원칙이 도입된 것은 1987년 형사소송법 개정부터이며, 1997년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사실에 대한 고지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고, 2007년 6월 1일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피의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경찰실무에서 현행범인체포시·긴급체포시·통상구속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고지의 구체적 사례(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현행범인체포시의 고지사항

“00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장 000입니다.”라고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

61) 조 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05, 63면.

62) 조 국, 앞의 책, 65-66면;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미란다원칙은 의회가 입법권으로 넘볼 수 없는 헌법적 규정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히고 “미란다원칙은 미국 문화의 일부로 간주될 정도로 경찰의 일상적 관행으로 정착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경찰의 강압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란다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권운동가들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미란다원칙으로 인해 범죄사실이 분명한 죄인들을 무죄 방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의 폐지를 주장해온 경찰 등 사법기관들은 큰 실망감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문화일보, 2000. 6. 27, 8면; 한겨레, 2000. 6. 27, 8면).

한다. ①귀하를 절도죄를 범한 현행범인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 영장 없이 체포합니다(범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② 귀하는 지금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③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변명할 기회를 부여).

### 2) 긴급체포시의 고지사항

“00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사 000입니다. 000씨 맞습니까?” 부인할 경우 간단한 신원확인을 한다. ①귀하는 00년 00월 00일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에서 강도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범죄 피의사실의 요지). ② 이는 긴급체포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해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겠습니다(체포의 이유). ③ 귀하는 지금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④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변명할 기회를 부여).<sup>63)</sup>

### 3) 통상구속시의 고지사항

사전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5조(동법 제209조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에 의거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제시 절차가 추가된다.

“00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사 000입니다. 000씨 맞습니까?” 부인할 경우 간단한 신원확인을 한다. ①귀하는 00년 00월 00일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에서 000씨를 살인한 혐의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범죄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영장의 제시). ② 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거 귀하를 구속하겠습니다(체포의 이유). ③ 귀하는 지금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④ 변명할 말씀

63) 경찰에서는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적법절차와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 경찰수사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① 긴급체포 요건 엄격 준수, 특히 긴급성 요건 엄격적용(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② 영장신청이 예상되는 등 필요최소한의 긴급체포권 행사, ③ 긴급체포 사전허가제 철저이행 등을 준수하고 있다.

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변명할 기회를 부여).

우리나라 피의자 방어권 고지(피의자 권리 고지)와 미국의 미란다 고지의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피의자신문여부와 상관없이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구속(동법 제209조, 동법 제72조)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진술거부권은 체포(구속)시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무에서 피의자신문조서작성시나 피고인 인정신문 전에 행한다. 그러나 미국의 미란다 고지는 체포 후 피의자신문 및 혐의자에 대한 질문 전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본인이 진술할 경우 그 내용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등의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본다.

### 3. 현행 체포관련 판례 및 보호제도

지역경찰관이 범죄 신고사건을 접수하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긴급을 요하여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체포는 인권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등 체포에 따른 현행 관련 법규와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헌법은<sup>64)</sup> 체포와 관련하여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64) 대한민국헌법[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원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규정하고, 동조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11조에서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sup>65)</sup>을 규정하고, 동법 제212에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4조에서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00조의3 제1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sup>66)</sup>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라고 ‘긴급체포’를 규정하고, 동법 제200조의2 제1항에

65)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66)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sup>67)</sup>라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00조의 5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인천00경찰서 00과출소에 근무하는 000 경장과 000 순경이 112차량을 타고 순찰 근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례”에서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 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 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67) 다만, 다액 5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지로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sup>68)</sup>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범인체포와 긴급체포시의 피의자 방어권 고지(피의자 권리 고지)를 행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경미범죄의 현행범인체포 사건에 대하여 “공소외인의 행위가 법정형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불과한 경우 비록 그가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고, 또한 범죄의 사전 진압이나 교통단속의 목적만을 이유로 그에게 임의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여,<sup>69)</sup> 경미범죄의 현행범인체포에 대해서 영장 없는 체포를 불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에 관하여 하급심 법원(서울형사지법)은 “가사 경장 박00의 위 행위를 현행범인 체포로 본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하면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경장 박0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그 법정형이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동행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경장 박00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주거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68) 대판 2000. 7. 4. 99 도 4341.

69) 대판 1992. 5. 22. 92 도 506.

확인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주거불명인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로서의 적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sup>70)</sup>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개념을 그 주거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즉 “주거불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수사상 피의자 등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책은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조사 사무실에 CCTV 설치, 수사과정 수사일지 작성, 원격화상조사제 시행, 자백피의자 면담제 시행, 심야조사 금지원칙 확립, 영장주의 및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 화상 대질조사실 운영, 시민 인권보호단 운영, 수사사건 공보기준 준수 등 피의자 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 제4절 지역경찰관의 범죄피의자 보호 방안

지역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체포하여야 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 고지(피의자의 권리 고지, 미란다원칙 고지)가 실제 범집행과정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는 제1항에서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라고 현행범인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등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고 준현행범인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70) 서울형사지법 1992. 12. 23. 선고, 92고합1834 판결.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sup>71)</sup>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모호하다. 지역경찰관의 법집행을 저지하거나 항의하는 공권력 경시 풍조 속에서 특히 경미사건 현행범인 체포 규정의 모호한 내용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역경찰관의 경찰권 발동이 불법체포가 될 수 있거나 피의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미사건의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한 실무 사례를 살펴보면 ① 피의자가 인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②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③ 지문확인 요구 불응, 도망하는 등 원천적으로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이 신원은 확인이 되나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서 과연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지역경찰관이 일선실무에서 수시로 부딪치는 문제이다.<sup>72)</sup>

위에서 보는바와 같은 내용의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고지(피의자의 권리 고지, 미란다원칙 고지)는 실력을 행사하여 체포하기 전에 미리 행 하여야 한다. 특히,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 대항하는 경우 또는 다수의 사람을 체포하여야 하는 등의 경우 등에서는 이와 같이 긴 내용을 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갑을 채운다든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와 동시에 고지하거나, 진압한 후에는 반드시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은 물론 가족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71)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 “법정형이 5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는 현행범인의 체포요건을 제한하는 경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 50만원 이하를 법정형으로 하는 사건”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

72) 조 국, 경미범죄의 효율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8. 9, 10-11면.

경미사건에 있어서 체포의 제한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의 주거나 이름을 조사하여 추후 소환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부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동안 현장을 이탈하는 현행범인을 체포나 제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경찰관이 현행범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현행범상 ‘주거불명’은 주거 부정을 포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임하는 경찰관이 그 즉시 또는 신속히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으로<sup>73)</sup> 지역경찰관은 경미범죄의 현행범인 체포시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인식하고 그 주거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절차를 분명히 이행하여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고 본다.

## 제5장 소년범에 대한 인권보호

### 제1절 문제의 제기

최근 소년범죄의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2005년12월부터 소년법 개정작업을 진행, 2007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소년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007년 6월 확정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일부 개정된 소년법에는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인

73) 법무부 법제과, 경미사건 현행범인 체포 유권해석 검토 의견, 2007. 4. 5-6면(○ 현행범인이 인적사항에 대한답변 거부, 신분증 제시거부, 지문확인요구 불응, 도망을 하는 등 신원조차 알 수 없어 원천적으로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이, 신원은 확인되나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부정’에 해당하고, ‘주거불명’의 개념에 포함되어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하하여 변경하였다. 이 개정된 소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거 범죄 행위를 해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아니하는 만 10세와 만 11세의 소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교화·선도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호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소년범죄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소년비행사건을 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찰관이 접수하면 소년범 사건 처리에서 있어서 인권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할 여러 가지 절차와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내일의 주인공이자 오늘의 젊은 주인공이기도 한 청소년의 문제는 어느 사회나 시대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주된 관심사이다. 청소년은 신체발달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호기심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으로 범죄행위를 하거나, 또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가치관의 혼돈으로 자아상실, 요구불만 등의 증폭, 가족구조와 의식의 변화로 인한 전통적 도덕의식의 상실 등으로 비행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거나 범죄행위로 처벌받음으로써 그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된다. 따라서 지역경찰관이 소년범죄 신고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제반초동조치 등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소년은 처벌보다는 건전한 지도육성과 보호가 우선이라는 정신으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소년의 보호자 및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의 협력을 얻어야 함은 물론 선입견과 속단을 피하고 소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 처리하여야 한다. 소년범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서 소년의 심리·생리·성행·환경·기타 비행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와 변호인·보호자의 입회 및 심리사 등 전문가의 참가 등이 확보되지 못하여 조사후의 공정성과 투명성,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소년범 신고사건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

여 정리함으로써 소년법들의 인권보호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제2절 소년의 개념과 소년범죄의 현황

### 1. 소년의 개념

소년기의 연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 학자들의 견해와 법률의 규정에는 일정하지 않으며 차이가 있다. 심리학자 E. L. Thorndike는 어린이가 성인으로 성숙할 때까지의 시기를 乳兒期(유아기), 幼兒期(유아기), 아동기, 청년기의 네 기간으로 구분하고 청년기를 다시 세 기간으로 구별하여 12세-14세까지를 과도기, 14세-18세까지를 청년전기, 18세-25세까지를 청년후기로 보았고,<sup>74)</sup> S. Freud는 청소년기를 “잠복기를 지나 성에 대하여 새로운 욕구를 느끼게 되는 단계”라고 정의하고 있다.<sup>75)</sup>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청소년 또는 소년기의 연령을 시간적인 간격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분 계층화하여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청소년이다”라고 쉽게 단정하기를 주저한다. 사람의 연령은 기계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대체로 심리학자들은 유아기(infancy), 아동기(childhood)를 지나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인 면에서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의 과도기(transitionperiod)적 단계를 청소년기로 보고 있다.<sup>76)</sup>

우리나라 소년법에서의 소년은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에서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sup>77)</sup>에서는 제3조 제1

74) 문중수, 청소년범죄의 실태 및 경향, 논설집 제5집,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1982, 15면.

75) 이상현, 소년비행학, 박영사, 1997, 4면.

76) 김형훈, 생활안전외근론, 경찰대학, 2008, 157면.

호에서 “ ‘청소년’ 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sup>78)</sup>에서는 제2조 제1호에서 “ ‘아동’ 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 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 에 따르면 ‘아동’ 을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 ‘가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 따르면 아동의 나이를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혼동의 소지가 있다. 또한 아동의 개념과 일반적으로 혼동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 의 개념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서는 어린이를 만 10세미만으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에서는 어린이의 범위를 ‘아동보호법’ 상의 ‘아동’ 과 동일하게 18세 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의 소년에 관련된 용어와 연령구분은 법 규정이 법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명칭 및 범위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소년의 비행 내지 범죄를 규율하는 법이 소년법이므로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19세미만을 ‘소년’ 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법률상 소년의 명칭 및 연령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3세 미만 해당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0호]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 [일부개정 2005.7.29 법률 제7623호]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 등.

77)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78)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② 14세 미만 해당법률 :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③ 15세 미만 해당법률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8호] 제64조 15세 미만인 자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④ 16세 미만 해당법률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3호] 제8조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분리 수용, 「형법」 제274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아동혹사), 「선원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81조 선박소유자는 16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함(사용제한).

⑤ 18세 미만 해당법률 : 「소년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제59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 제62조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함(환형처분의 금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 ‘아동’ 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용어의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 ‘청소년’ 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정의), 「근로기준법」 제65조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사용 금지) · 제66조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 비치(연소자 증명서) ·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금지(근로시간) ·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40호] 제21조의3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됨(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제5조 18세 미만인

사람 통고처분금지, 「선원법」 제81조 18세미만의 선원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위험한 선내작업과 위생상 유해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됨(사용제한) · 제82조 18세미만의 선원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야간작업의 금지), 「공연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 ‘연소자’ 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⑥ 19세 미만(년 19세 미만)해당법률 : 「소년법」 제2조 ‘소년’ 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함(정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 ‘청소년’ 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정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안에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입장하게 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의 참가 금지 등이다.

청소년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신체발달에 비하여 성숙하지 못해 감정통제 부족으로 충동적으로 우발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면서 뚜렷한 범행동기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 라든지 ‘호기심에서 한번 해 보았다.’ 라든지 등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사회규범에 저촉되는지도 모르는 채 무동기성으로 범죄행위를 하기도 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폭력 · 음란 매체물을 쉽게 접할 수 되었고 무분별한 유흥업소의 확산으로 주위의 향락적 문화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며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한편 청소년의 범법행위 뿐 아니라 가정해체 및 선도인프라 부족 등으로 비행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전망이 미흡하여 다시 유해환경에 노출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것이다.

## 2. 소년범죄의 현황

다음의 [표 4 - 1]과 [표 4 - 2]은 1998년에서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지난 10년간 “연도별 소년범죄 현황” 과 “연도별 소년범죄 재범율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0년 이후 감소하던 소년범은 2007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으로 폭력범과 절도범이 증가하여 2006년 90,628명에서 2007년 115,661명으로 전년도대비 27.6%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범죄자의 5.5%를 점유하고 있다. 소년범죄의 구성비를 보면 폭력범이 27.9%, 절도 33.0%, 교통사범 등 특별범이 30.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sup>79)</sup> 소년범죄의 재범자는 2006년도에는 총 소년범죄 90,628명에서 재범자가 26,450명으로 29.2% 이고, 2007년도에는 총 소년범죄 115,661명에서 재범자가 33,687명으로 29.1%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년범 상당수가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표 4 - 3]은 1998년에서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지난 10년간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2007년 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4세미만이 2,602명으로 2.2%, 14-15세 37,256명 으로 32.2%, 16-17세 41,473명으로 35.9%, 18-19세 34,330명으로 29.7% 로 16-17세 고등학생 연령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15세 이하 중학생 연령층이 다. [표 4 - 3]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년범죄가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4 - 1] 연도별 소년범죄 현황<sup>80)</sup> (단위 : 명)

79) 경찰청, 2008 경찰백서, 75-76면.

80) 경찰청, 앞의 책, 76면(소년범죄는 12세이상 20세미만 소년에 의한 범죄를 말함).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51,383	141,519	143,018	131,059	115,210	96,697	86,861	83,477	90,628	115,661
형법범	103,243	94,310	96,150	84,518	75,551	67,408	61,577	62,008	66,740	80,008
특별법범	48,140	47,209	46,868	46,541	39,699	29,289	25,284	21,469	23,888	35,653

[표 4 - 2] 연도별 소년범죄 재범율 현황<sup>81)</sup> (단위 : 명)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소년범	151,383	141,519	143,018	131,059	115,210	96,697	86,861	83,477	90,628	115,661
재범자	50,598	51,058	50,588	48,216	41,749	33,814	29,431	25,920	26,450	33,687

[표 4 - 3]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sup>82)</sup> (단위 : 명)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4세미만	1,440	1,330	1,443	1,378	1,667	1,376	1,503	1,679	1,718	2,602
14-15세	33,908	28,691	31,518	26,565	24,042	22,305	19,141	23,045	27,662	37,256
16-17세	56,498	50,739	50,506	43,653	38,426	32,524	27,247	28,292	31,408	41,437
18-19세	59,537	60,754	59,557	59,463	51,075	40,492	38,970	30,461	29,840	34,330

81) 경찰청, 앞의 책, 77면.

82) 경찰청, 앞의 책, 78면.

## 제3절 청소년 관련 법령 및 보호제도

### 1.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으로 청소년기본법<sup>83)</sup>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동법 제5조 제2항은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년법<sup>84)</sup>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sup>85)</sup>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외에 청소년보호관련 풍속법령으로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2. 청소년보호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세계 소년 법제의 선구를 이룬 미국의 경우 가벼운 비행사건은 소년법원에

83)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84) 소년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85)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7호]

송치하는 대신 경찰이 청소년봉사국에 보내어 부모 및 학교와의 협력하에 상담·치료 등 개선프로그램을 운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각 주마다 법 제도가 다르나 다수 주의 공통적인 점을 살펴보면, 소년의 범위는 대개 10세에서 17세까지이고, 우범이나 요보호소년은 민사나 행정절차로 취급된다. 소년에 대한 처분은 형벌 이외에도 보호관찰, 집중지도감독, 자택구금·전자감시, 통근처우, 소년원, 농장·산림캠프, 그룹거주, 보호소, 벌금, 피해배상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다. 영국의 경우 통일적인 법전은 없으나 1908년 소년에 대한 특칙이 생기고, 1933년까지 소년재판제도가 확립되었다. 현재로는 10세부터 17세의 범죄소년이 소년재판절차의 대상이 되고, 요보호 소년은 가사절차 재판소에서 별도로 취급되었지만, 18-20세까지의 자에 대해서도 일부특칙이 있다. 경찰에 의한 경고처분으로 종국되는 사건도 많다. 소년재판소에서는 유죄 인정 후 처우결정이 행해진다. 소년에 대한 처분은 중죄에 대한 장기의 구금명령 외에, 수용처분으로 구금훈련명령, 사회내처우로서 석방처분, 부모에 대한 서약명령, 벌금·배상명령, 감독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결합명령, 외출금지명령이 있다. 독일의 경우 소년에 대한 절차는 형사재판 절차를 기본으로 하고, 보호·교육적인 관점에서부터 공개제한, 보호자의 출석, 전문성이 있는 소년심판보조관의 조사·심판 관여 등의 수정을 가하고 있다. 이 외의 특칙으로서의 검찰관에 의한 기소유예, 재판관에 의한 절차중지 등이 인정된다. 14세부터 17세의 범죄소년이 대상이지만, 18세부터 20세의 준성인도 소년에 준한 취급이 가능하다. 요보호·요부조소년은 소년국이나 후견재판관의 관할로 되고, 촉법소년도 교육원조 조치의 대상이 된다.<sup>86)</sup>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범죄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 법무부는 2005년12월부터 소년법 개정작업을 진행, 2007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소년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007년 6월 확정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2007. 12. 21 법률 제 8722호로 일부 개정된 소년법에는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

86) 김형훈, 앞의 책, 175-176면.

상으로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범죄소년은 14세이상 20세미만이며, 촉법소년은 10세이상 14세미만, 우범소년은 10세이상 이상자이나, 일본의 경우 범죄소년은 14세이상 20세미만이며, 촉법소년은 14세미만, 우범소년은 20세 미만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소년에 대하여 경찰은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보호처분 대상인지 여부를 선별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법정형이 벌금이하인 죄에 해당하는 소년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직접 가정재판소로 송치하고 있다.<sup>87)</sup>

### 3. 소년업무 처리규칙 및 보호제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소년범 처리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종의 법령과 제도를 시행 소년범에 대한 인권보호를 기하여야 한다. 일선 경찰실무에서 소년사건 취급시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으로 “소년업무 처리규칙”<sup>88)</sup>이 있다. 동 규칙 제35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소년일지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 기타 강제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의하여 부득이한 체포, 구금, 기타 강제조치를 결정하려고 할 때 또는 강제조치를 집행하려고 할 때에는 범죄소년의 연령, 성격, 비행경력, 범죄의 내용, 구금 장소의 상황, 구금시간, 기타 강제조치로부터 당해 소년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강제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조치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36조는 “경찰관은 소년의 범죄가 친고죄로서,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되었을 경우에도 장래 비행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범소년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87) 김형훈, 앞의 책, 177면.

88) 소년업무 처리규칙 : [1991. 7. 31 경찰청예규 제10호] ,(제명변경) 2007. 12. 31 예규 제376호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이상으로 피해자를 소환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심정에 반하는 조사를 피하여야 한다.” 라고 친고죄 등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규칙 제37조는 “범죄소년에 대한 여죄의 수사는 당해 소년의 비행경력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장래에 대한 재비행 위험성의 판단 및 비행방지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라고 여죄의 수사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38조는 “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소년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범죄소년의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전후의 상황, 기타 범죄사실 및 범죄의 정황을 입증하는 제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 서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범죄소년에 대한 서류의 작성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칙 제39조는 “경찰관은 범죄소년의 수사에 있어서 소년의 비행방지상 소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에 의하여 이를 압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유권자, 기타 권리인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그 보호자에게 예치시키거나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시키는 등 당해 범죄소년이 물건을 소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범죄소년의 소지한 물건의 조치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촉법소년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40조(촉법소년에 대한 서류의 작성) · 제41조(준용) · 제42조(촉법소년의 일시보호) · 제43조(촉법소년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범소년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44조(우범소년에 대한 긴급조치) · 제45조(준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년범 조사와 관련하여 “소년업무 처리규칙”은 제9조에서 “경찰관이 소년 또는 그 보호자를 면접할 때에는, 면접시간은 최소한도로 하고, 소년의 수업중 또는 취업중의 시간 및 야간을 피하여야 한다. 면접장소는 타인의 이목을 피하여 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긴장하지 않고 면접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면접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면접중에 행하는 대화의 기록은 신문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요지만을 기입할 것이며, 소년이나 그 보호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면접중에는 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허위진술 또는 반항을 한다고 하여 흥분하거나 멸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드럽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여 스스로 자제와 반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면접이 끝났을 때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가 불안감을 갖지 않고 경찰의 선도 및 처우에 신뢰를 갖도록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면접시의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칙 제31조에는 “경찰관은 비행소년을 수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송치 또는 통고여부 및 송치 또는 통고할 기관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소년의 보호자, 기타 소년에 대하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선입감과 속단을 피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폭행·협박·기망 기타 조사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있는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조사는 단시간에 끝내도록 유의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보호자나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수사 또는 조사시의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사건 취급시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으로 위에서 언급한 “소년업무 처리 규칙”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규칙”<sup>89)</sup> 제12장 특 칙 제1절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제207조 - 217조)을 반드시 준수 소년범에 대한 인권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91. 12월 조약 제1072호 발효) 제37조·제40조에서 정한 형사피의자로서의 처우를 보장 받아야 한다.

89) 범죄수사규칙[1991.7.31 경찰청훈령 제57호] 개정 2008. 7. 22 훈령 제526호.

현재 경찰에서는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란 소년범 조사과정에서 범죄심리사가 참여, 비행촉발요인 및 344개 문항의 인성평가 심층분석을 통해 소년범 선도 및 재범가능성을 판단해 주고 전문적인 선도를 연계하는 과학적이고 소년 인권보호적인 수사시스템이다. 2003년 2개 경찰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4년 5개 경찰서, 2005년 45개 경찰서, 2006년에서부터 2007년에는 5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이다.<sup>90)</sup> 또한 진술녹화실 운영으로 진술의 최소화 및 2차피해방지를 하고 있다. 2003년 「성폭력범죄의처벌과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진술녹화가 의무화된 후 2006년 10월 27일 법률의 재개정으로 진술녹화의 의무대상이 16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 12월 현재 전 지방경찰청, 경찰서, ONE-STOP지원센터 등 269개소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2007년에는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571건의 진술녹화를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반복 출석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일반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청소년사범·성매매·청소년성매매 등 타범죄의 경우에도 총 7,997건의 진술녹를 실시 인권보호를 기하고 있다.<sup>91)</sup>

## 제4절 지역경찰관의 소년범 보호 방안

### 1. 신고접수와 소년범 보호

지역경찰관이 최초 소년범죄 신고사건을 접수하면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란 점을 명심하여 소년은 처벌보다는 건전한 지도육성과 보호가 우선이라는 정신으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소년의 보

90) 경찰청, 앞의 책, 78면.

91) 경찰청, 앞의 책, 95-96면.

호자 및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의 협력을 얻어야 함은 물론 과거 경험이나 선입관에 의한 주관적 판단을 피하고 소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 인권보호에 착안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소년범죄는 충동적인 행동으로 범죄행위를 하거나, 무동기성 또는 향락적 문화의 유혹에 쉽게 빠져 범죄행위를 하므로 소년범 처리에 있어서는 소년의 심리·생리·성행·환경·기타 비행의 원인을 이해하고, 변호인·보호자의 입회 등을 확보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현장출동 면접과 소년범 보호

지역경찰관이 최초 소년범죄 신고사건을 접수하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 제반초동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소년범 조사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소년 또는 그 보호자를 면접할 때에는, 면접시간은 최소한도로 하고, 소년의 수업중 또는 취업중의 시간 및 야간을 피하여야 하고 면접장소는 타인의 이목을 피하여 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긴장하지 않고 면접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면접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면접중에 행하는 대화의 기록은 신문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요지만을 기입할 것이며, 소년이나 그 보호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면접 중에는 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허위 진술 또는 반항을 한다고 하여 흥분하거나 멸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드럽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여 스스로 자제와 반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면접이 끝났을 때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가 불안감을 갖지 않고 경찰의 선도 및 처우에 신뢰를 갖도록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비행조사와 소년범 보호

지역경찰관은 소년범 조사에 있어서 소년은 처벌보다는 건전한 지도육성과 보호가 우선이라는 정신으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함을 잊지 말고 소년의 특성에 맞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년의 보호자, 기타 소년에 대하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야 하고, 선입감과 속단을 피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폭행·협박·기망 기타 조사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 있는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는 단시간에 끝내도록 유의하고, 심야조사를 피해야 하며, 조사에 보호자나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경찰실무에 시행하고 있는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적극 활용하고, 진술녹화의 의무대상인 1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진술녹화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년사건 취급시에는 「소년업무 처리규칙」·「범죄수사규칙」등 제반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원칙을 실현 소년범에 대한 인권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형사피의자로서의 처우를 보장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장 결론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가지므로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며,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

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경찰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인권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인권경찰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항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순찰활동과 거점근무·검문검색 등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초동진압 및 수사·교통의 단속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직무를 최 일선에서 수행하는 지역경찰관은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경찰작용의 성격상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의 충돌 위험성은 한층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지역경찰관의 직무집행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찰이 되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지역경찰관은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자로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직무집행 과정 등에서 국민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인권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은 물론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사회적 약자인 소년범 등을 보호하는 인권경찰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과의 최일선 접점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찰관이 범죄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범죄피해자·피의자·소년범 등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요약한 결론을 제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이다. 지역경찰관은 범죄피해사건을 접수하면 범죄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권리, 공정한 처우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받

을 권리, 피해회복의 권리, 의견을 진술할 권리, 지원을 받을 권리, 재피해를 입지 아니할 권리, 사건해결에 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 등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당황한 피해자를 안도하게 한 뒤 선입견 없이 신속·정확·친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세로 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범죄현장에 출동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구호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 도착 즉시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며 현장은 가능한 한 원상태로 보존하고, 피해사실 청취시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해결의 의지를 보여 신뢰감을 부여한다. 피해자에게 피해자 안내서를 교부하고 피해자가 각종 제도 및 지원 단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신고자나 목격자에 대한 보복, 인질강도 및 약취유인, 가정 폭력사범 등의 경우 피해자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다. 피해·신고내용에 대한 진술이나 범인식별 등을 위하여 지구대 등으로 피해자를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위해나 보복을 방지한다. 용의자가 옆에 있거나 112순찰차에 승차시킨 경우에는 무전이나 순찰차 네비게이션 등을 통하여 신고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 있어서 사전에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여 신뢰감을 조성 협조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인식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기본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연령, 심신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의 사실에 관하여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종래에는 범죄피해자를 증거수집의 객체로서만 인식

하거나 형사절차에 협조자로만 인식하였다. 그러나 지역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도 당연히 헌법상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인식하고 조사 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협력, 실체적 진실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경찰관이 피해자를 형사절차에 있어서 증거방법의 확보 차원에서 피해자를 조사의 객체 및 협조자로만 인식하여, 지구대 등 경찰관서로 장소를 이동하여 장시간 조사하거나 가해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반복출석·대질 등 행정편의위주의 조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조사시 사건을 축소·묵살하거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실적보다는 정직과 청렴성이 최우선되는 가치임을 명심하여 적법·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피해품 회수 등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고, 신고사건처리 과정을 상세히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조사시에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참여시켜 피해자에게도 피의자·피고인에 준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확대되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원칙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범죄피의자에 대한 보호이다. 일반피의자의 권리로는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증감·변경청구권, 증거보전청구권, 압수·수색·검증에의 참여권 등이 있고,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로는 체포·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 피체포·구속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변호인·가족 등과의 접견교통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체포·구속취소청구권, 체포·구속영장 피청구시 자료제출권,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등이 있음을 지역경찰관은 깊이 인식하고 항상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피의자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역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대항하거나 다수의 사람을 체포하여야 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고지(피의자의 권리 고지, 미란다원칙 고지)는 실력을 행사하여 체포하기 전에 미리 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과 상황에 따라 방어권을 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갑을 채운다든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와 동시에 고지하거나, 진압한 후에는 반드시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은 물론 가족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경미사건에 있어서 체포의 제한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의 주거나 이 름을 조사하여 추후 소환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부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동안 현장을 이탈하는 현행범인을 체포나 체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경찰관이 현행범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현행법상 ‘주거불명’은 주거 부정을 포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임하는 경찰관이 그 즉시 또는 신속히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으로 지역경찰관은 경미범죄의 현행범인체포시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인식하고 그 주거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절차를 분명히 이행하여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로, 소년범에 대한 보호이다. 지역경찰관이 최초 소년범죄 신고사건을 접수하면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란 점을 명심하여 소년은 처벌보다는 건전한 지도육성과 보호가 우선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소년범죄는 충동적인 행동으로 범죄행위를 하거나, 무동기성 또는 향락적 문화의 유혹에 쉽게 빠져 범죄행위를 하므로 소년범 처리에 있어서는 소년의 심리·생리·성행·환경·기타 비행의 원인을 이해하고, 변호인·보호자의 입회 등을 확보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경찰관이 최초 소년범죄 신고사건을 접수하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 제반초동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소년범 조사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소년 또는 그 보호자를 면접할 때에는, 면접시간은 최소한도로 하고, 소년의 수업중 또는 취업중의 시간 및 야간을 피하여야 하며, 면접장소는 타인의 이목을 피하여 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긴장하지 않고 면접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면접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면접중에 행하는 대화의 기록은 신문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요지만을 기입할 것이며, 소년이나 그 보호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면접 중에는 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허위 진술 또는 반항을 한다고 하여 흥분하거나 멸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드럽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여 스스로 자제와 반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면접이 끝났을 때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가 불안감을 갖지 않고 경찰의 선도 및 처우에 신뢰를 갖도록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경찰관은 소년범 조사에 있어서 소년은 처벌보다는 보호가 우선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소년의 특성에 맞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년의 보호자, 기타 소년에 대하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야 하고, 선입감과 속단을 피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폭행·협박·기망 기타 조사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 있는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는 단시간에 끝내도록 유의하고, 심야조사는 피하여야 한다. 보호자나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고,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경찰실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확대 적극 활용하고, 진술녹화의 의무대상인 1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진

술녹화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년업무 처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제반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원칙을 실현하고,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형사피의자로서의 처우를 보장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친절한 이웃이고, 지역수호자이며, 민중의 지팡이인 지역경찰관은 사회적 약자이며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내일의 주인공들이 비행과 관련하여 그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 않도록 소년범 사건처리시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6.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2007.  
\_\_\_\_\_, 2007 경찰백서, 2007.  
\_\_\_\_\_, 제50호 경찰통계연보 2006, 2007.  
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집(제1집), 200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김재광,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8.  
김형훈, 생활안전외근론, 경찰대학, 2008.  
\_\_\_\_\_,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대학, 2008.  
문홍주,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유풍출판사, 2002.  
\_\_\_\_\_, 기본적 인권연구, 해암사, 1991.  
박현호, 범죄예방론, 경찰대학, 2007.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7.

- 사법연수원, 수사절차론, 2005.
- 서울지방경찰청, 지역경찰업무 매뉴얼, 2004.
-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 이상현, 소년비행학, 박영사, 1997.
- 이석용 외, 국제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 이승우, 기본권론, 도서출판 두남, 2007.
-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7.
- 이윤호, 피해자학, 2007.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 정웅석 · 백승민,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8.
- 정인섭,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7.
- 조 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05.
- 조효제외, 인권길라잡이 - 경찰편, 국가인권위원회, 2002.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7.

## 2. 논문

- 구병삭,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문제, 월간고시, 1990. 2.
- 권영호 · 김일환, 헌법상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과 정책 제7호, 2001. 8.
- 김용세 · 김재민,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와 경찰관 교육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6-02, 2006.

- 김지선의,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2.
- 김지선 · 이동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2.
- 나영민 · 박노섭,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2.
- 문종수, 청소년범죄의 실태 및 경향, 논설집 제5집,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1982.
- 백형구, 피의자와 피고인의 비교, 고시계, 1992. 3.
- 송기오 · 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2.
- 안경환, 위대한 이름, 추악한 생애 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 사법행정(통권316호), 1987. 4.
- 정진수, 형사절차상 취약계층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2.
- 조 국, 경미범죄의 효율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8.
- 최인섭외,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06-03, 2006.
- 황태정, 범죄피해자보호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2.

## II. 국외문헌

### 1. 일본문헌

- 高井康行 · 番敦子, 犯罪被害者保護法制解説, 三省堂, 2005.
- 宮澤浩一 · 田口守一 · 高橋則夫, 犯罪被害者の研究, 成文堂, 1996.
- 木下外晴, 警察の姓犯罪被害者對策, 捜査研究, 1999.
- 白取祐司, 刑事訴訟法, 日本評論社, 2005.
- 福井 厚, 刑事訴訟法, 有斐閣, 2002.

- 安田貴彦「イギリスにおける警察による被害者政策の現状」,「警察學論集」 49-1, 1996.
- 鈴木茂嗣, 刑事訴訟法(改正版), 青林書院 1990.
- 長島裕, 犯罪被害者をめぐる現状, 法律のひろば 第50巻 第3號, 1997.
- 田口守一, 刑事訴訟法, 弘文堂, 2003.
- 田宮 裕, 刑事訴訟法, 有斐閣, 2002.
- 庭山英雄, 岡部泰昌, 刑事訴訟法, 青林書院, 1995.
- 井戸田侃, 刑事訴訟法 要設, 有斐閣, 1993.
- 青柳文雄外, 註釋 刑事訴訟法( I )( II ), 立花書房, 1983.
- 萩原金美, 訴訟における主張・證明の法理, 信山社, 2002.
- 太田祐之, 被害者に對する支援-警察の立場から, 「ジュリスト」 1163, 1996.

## 2. 영미 · 독일문헌

- Brickman, Ellen, Development of a National Study of Victim Needs and Assistancess, U.S. Department of Justice, 2003.
- Galaway, Victim-participation in the penal corrective process, Victimology(Vol, 10), 1985.
- Karmen, Andrew, Crimw Victims :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Wadsworth Publishing Company(Belmont, California), 2002.
- Kloepfer, "Der Vdrbehalt des Gesetzes im Wandel", JZ, 1984.
- LaFave-Israel, Criminal Procedure, 2nd Edition, 1992.
- Roxin, Claus, Strafverfahrensrecht, München, 24. Aufl. 1995.
- Taylor, B. M., Rand, M. R.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Redesign: New Understanding of Victimiza Dynamic and Measurement Proceedings of Section on Survey Research Methods, 1995.

책임연구보고서 2008-08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 피의자 · 소년범을 중심으로 -**

---

---

발행일 : 2008년 12월 26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